

「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 및 적용범위 (안 제1조~제3조)
-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, 설치조성, 처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- 시설물의 사용허가, 사후관리,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9조)
- 기금의 조성 및 관리, 시설물의 환수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~제11조)
-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~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소유권 및 설치·조성·운영에 대한 사항을 필요시 주민단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물의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주민 의견의 수렴과 협의를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, 주민단체 이관 시 안전책임·사후관리 등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및 장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